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재해 실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칠백의총 순의제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정원 1명(4·5급 1명)과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이체하고, 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을 “국가민속문화재·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로, “지정·해제”를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를 “민속문화재”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287”을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6”을 “2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5”을 “27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7”을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3”을 “18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문화재정책국) ① (생략)	제7조(문화재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u>	<u><삭제></u>
12. 삭제	
13. 시·도 지정 문화재 중 <u>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3. ----- <u>무형문화재</u> ----- -----
14. ~ 23. (생략)	14. ~ 2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 (생략)	제8조의2(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만 해당한다)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국</u>	15. <u>국가민속문화재·사적(근대건축물·시설물</u> ----- ----- ----- <u>지정·해제·보존</u>

가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시·도 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건조물만 해당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생략) 제31조의3(소장) ① 만인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u>및 관리</u> 17. 민속문화재 18.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소장) ①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7</u>	<u>289</u>	+2
•	•	•	
•	•	•	
일반직 계	<u>286</u>	<u>288</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75</u>	<u>277</u>	+2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37</u>	<u>236</u>	-1
·	·	·	
·	·	·	
일반직 계	<u>190</u>	<u>18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3</u>	<u>182</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